



실험실습운영위원회 운영 규정

규정 번호	4-1-13
제정 일자	2021. 10. 1.
개정 일자	2024.3.20.
책임부서/팀·계	전산정보원

제1조(목적) 본 대학의 실험실습기자재 및 소프트웨어의 관리, 보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수립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험실습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며 교무처장, 사무처장, 대외협력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7인 이내로 구성한다.<개정 2024.3.20.>

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 <개정 2023.3.30., 2023.12.7., 2024.3.20.>

제3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) 위원장은 회무(會務)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실험실습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
2. 소프트웨어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손·망설 기자재 및 불용품(不用品) 기자재의 처리 사항
4. 실험실습기자재 도입 및 보완에 관한 사항
5. 전년도 시행 성과평가 및 개선사항
6. 기타 총장이 명하는 사항

제6조(운영) 위원회는 제5조의 사항 중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, 성과평가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 실험실습기자재 관리규정에 의하여 심의 처리한다.

제7조(회의)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9조(간사)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의 제2조(구성)은 202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